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체계 마련 〉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03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체계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견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5. 8.
3. 회 부 일 : 2026. 5.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을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며,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자 함(안 제1조,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체계 마련

-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며,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u>안정</u>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안정, 탄소중립</u> <u>사회로의 이행</u> 및----- ----- ----- ----- -----.
제18조(업무)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②·③ (생략)	제18조(업무)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의</u> <u>육성</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33조의2(탄소중립금융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산업은행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금 공급 및 협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소중립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지만, 이와 관련한 사항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이에 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¹⁾로의 이행”을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의 육성”을 추가하는 한편, 한국산업은행이 여타 정책금융기관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금융 역할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임.

현재 한국산업은행도 국가의 탄소중립 추진정책 방향에 맞추어 탄소중립전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의 자금공급 중 탄소중립과 관련된 분야의 투입 규모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추가하여 명시한다면 이를 보다 강조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025. 4. 기업들의 탄소규제 대응 지원을 위하여 ‘공급망 저탄소화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녹색자금 금리 우대,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 1의2. “이상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 1의3. “극한기후”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하 “순배출량”이라 한다)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하 생략)

ESG채권 발행 지원 등의 금융서비스와 ESG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음²⁾.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약 29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할 계획임.

<한국산업은행의 녹색금융 자금 공급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30년(목표)
규모	16.4조원	19.6조원	22.9조원	23.1조원	28.9조원

※ 녹색금융 자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공급된 자금

* 자료: 한국산업은행

□ 다만, 현행법상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이 명시되어 있는데(2014. 5. 21., 전부개정 시 추가된 표현),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념을 탄소중립 달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이를 별도로 법률에 명시할 실익이 있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등의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³⁾

2) 2025. 4. 21. <한국산업은행, 국내 대기업 협력사들의 탄소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공급망 저탄소화 프로그램 출시’> 보도자료 참고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산업은행의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의 육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에서 개정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한국산업은행은 현행법 제18조제1항제8호4)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자금 공급 근거에 따라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음.

□ 탄소중립금융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추진체계를 이 법에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도시·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정의·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업무)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산업의 개발·육성
2. 중소기업의 육성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4.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5. 기업·산업의 해외진출
6. 기업구조조정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개정안과 같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금융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같은 협의체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고, 현재에도 정책금융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 정책 전반에 관한 금융지원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의 지위를 고려할 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만 별도의 협의체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만일 법률에 이를 명시할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가 소관하고 있으므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⁵⁾.

또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산업은행 외에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책금융기관”을 정의하고 있지는

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부터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므로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협의 및 일관된 정책 시행을 위해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않으므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을 예측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⁶⁾.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 하에서도 탄소중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를 별도로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4

6) 법제처에서는 탄소중립금융협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이 정책금융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자료】 한국산업은행의 탄소중립 이행 관련 활동 현황

□ 국가 기후금융은행(K-Climate Bank)으로서 녹색전환 선도

- 한국산업은행법상 '지속가능성장 지원'을 주요 역할로 명시함으로써 기후 금융의 공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유망 녹색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의 저탄소화 전환 지원
- 「KDB 녹색금융 추진체계」 수립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 연계한 중점지원 분야에 장기·대규모 자금 공급
 - 4대 중점지원 분야 대상으로 2026년 총 4개 녹색특별상품 운용

KDB 녹색금융 추진체계				
목 표	• 대한민국 탄소중립 ·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국가 기후금융은행			
추진방향	• (산업) 유망 녹색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 低탄소화 지원 • (금융) 초기단계 위험흡수 및 장기 · 대규모자금 공급			
2035 목표	• (정량목표) 녹색금융 330조원 공급('24~'35) • (비중목표) 녹색금융 비중 35.5% 달성			
중점 지원분야	산업구조 저탄소화	에너지 전환	녹색 소부장 육성	친환경사회 조성
녹색 특별상품	KDB 탄소스프레드 (자체재원)	녹색경제활동 지원자금		
	KDB 탄소스프레드 (이차보전)	KDB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 (해상풍력, 수소인프라, 기후테크)	자체재원 상품 기후대응기금 연계	
성과관리	• 영업점의 기후금융 공급실적을 KPI에 반영			

□ 녹색금융 공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지원

- 당행은 녹색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저탄소 분야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산업 전반의 탄소감축을 유도
 - 매년 녹색금융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2024~2035년 누적 33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계획
 - 2025년 정부 정책금융기관 녹색자금 공급목표* 51.7조원의 44.7%에 해당하는 23.1조원의 녹색금융 공급
 - * (2024. 3.) 금융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 2026년 상반기 녹색금융 자금공급 12.5조원 달성



- 국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미래에너지 펀드(산은·5개은행 출자)」, 해양산업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KDB Smart Ocean Shipping Fund」 등을 조성하여 지원 중
[「미래에너지 펀드」 개요]

- (목적)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험자본(지분투자, 후순위대출) 공급
- (대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및 수소관련 인프라
- (참여) 당행, 5대 시중은행(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및 은행계열 자산운용사 6개
- (규모) '30년까지 총 9조원 출자(당행 1.8조원, 5대 시중은행 7.2조원)

[「KDB S.O.S 펀드」 개요]

- (목적) 탈탄소, 스마트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 (대상) 친환경(수소, LNG 등), 스마트선박(AI 등) 도입·건조 등
- (규모) US\$14억(당행 US\$9.8억, 他금융기관 및 사업주 등 참여)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친환경·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온렌딩* 및 기금 프로그램 운영 중

- * 중개금융기관이 당행에서 자금을 전대받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대출 형태
- (온렌딩) 탄소중립지원, 산업전환지원, 신산업육성
- (기금) 에너지이용 합리화, 탄소중립전환선도, 환경정책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지원

- 당행은 GCF* 인증기구로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발굴하여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UN기후변화협약 산하 국제기구

- 2022년 국내 최초 GCF 협력사업 승인 후 2024년 2건 승인을 추가하였고, 2026년 既 승인사업 3건* 모두 원활히 실행하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

* ①인도네시아 산업계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②캄보디아 기후금융 지원사업, ③ 기후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 자료: 한국산업은행

문 의 처
02)6788-5104